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근로시간 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13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하상욱 외 16명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한민국 청소년국회
	성명 : 하상욱 외 16명
건명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근로시간 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3년 8월 12일

## 소개의견

청원인 하상욱 외 16명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2013년 8월 제11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근로시간 기준 변경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 근로자의 노동착취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18세 미만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교대근무를 제한하는 하는 법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학생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8세 미만’을 ‘18세 미만(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3학년생은 제외)’로 개정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
<p>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p>	<p>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p>

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 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 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 69조 (근로시간)

-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단, 특성화고 및 마**

<p>제 69조 (근로시간)</p> <p>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p><b>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은 제외)</b></p> <p>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	--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무분별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취업우선의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때부터 미리 진로를 결정하여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제도 변화에 비해 관련법 조항의 변화가 뒤처짐에 따라 부작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같은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강, 전력 생산, 관리와 같이 24시간 동안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교대근무나 초과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고용절차를 거치게 되거나 취직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학생들의 꿈을 막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현 근로기준법 제 51조 3항, 제 52조 1항, 65조 1항, 69조 1항에 명시된 ‘18세 미만’이라는 문구를 ‘18세 미만(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은 제외)’로 변경하여 단지 몇 달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 학생들이 지망하는 기업에 취업해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개정
<p>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대상 근로자의 범위</p>	<p>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p> <p>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대상 근로자의 범위</p>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 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69조 (근로시간)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 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 **(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 69조 (근로시간)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은 제외)** 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